

점 포 임 대 차 계 약 서

임대인_	(이하"	갑"이라	한다)과 임]차인	(০) চ	ㅏ "을"이	라 현	난다)은 아	·래
표시의	부동산(이하	"표시부	-동산"이라	한다.)에	관하여	다음과	같이	합의하여	
계약을	체결한다.								

<부동산의 표시>

소재지	구조	면적	
	용도		

제1조(목적) 갑은 표시부동산을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식당으로 사용한다.

제2조(보증금) 임차보증금은 금____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.

계 약 금	급	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
중 도 금	그	원을 20○○년 ○월 ○일 지급하고
잔 금	급	원은 20○○년 ○월 ○일 지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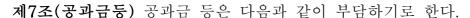
제3조(건물의 인도) ①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○○년 ○월 ○일로 한다.

② 갑이 제1항의 인도기일까지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때부터 인도일 전일까지 1일당 금____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4조(임대차기간) 임대차 기간은 20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20〇〇년 〇월 〇일까지로 한다.

제5조(월차임) 월세금액은 매월 10일에 지불키로 하되 만약 기일내에 지불치 못 할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키로 한다.

제6조(임대인의 동의) 표시부동산의 구조변경 또는 증·개축 시, 표시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용도 변경 시, 표시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,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려 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

- 1. 갑이 부담하는 비용 : 재산세 등 부동산에 귀속되는 세금, 대수선비
- 2. 을이 부담하는 비용 : 전기료·수도료·가스 등의 사용료, 화재보험료, 관리 비 기타 쉽게 수리할 수 있는 소수선비
- 제8조(계약의 해제 및 해지) ① 을의 중도금 지급 전까지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 - ② 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을이 제6조에 위반한 경우
 - 2. 표시부동산을 심하게 파손하고 갑의 요구에도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
 - 3. 기타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

제9조(원상회복)

- 1. 을은 임대기간 중 그의 귀책사유에 의한 표시부동산의 파손·오손 또는 무단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후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.
- 2. 표시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 기타 원인으로 멸실되었을 때에는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・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00년 0월 0일

임 대 인	주 소	_				
	성명	9	주민등록번호	1	전 화 번 호	
임 차	주 소	_				
차 인	성명	9	주민등록번호	-	전 화 번 호	
이	주 소	<u>-</u>				
회 인	성명	3	주민등록번호	-	전 화 번 호	